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859

발의연월일: 2021. 10. 15.

발 의 자:김용민·고영인·김의겸

민병덕 • 박주민 • 서동용

유정주 • 윤영덕 • 이성만

최혜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1년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한 '법조일원화' 제도의 도입 취지를 유지하면서, 운용과정에서 현실적인 판사 수급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 자 함(안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).

법률 제 호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단서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 2023년까지 임용권자는 연도별 임용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을 5년 이상 7년 미만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율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(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 제2조(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 수에 관한 경과조치) 제42조제 수에 관한 경과조치) ------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 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제42조제1 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 에서, 2018년 1월 1일부터 2021 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 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제42 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 람 중에서,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 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 다. <단서 신설> --. 다만 2023년까지 임용권자 는 연도별 임용예정인원의 일정 비율을 5년 이상 7년 미만 제42 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 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으며 이

경우 그 비율은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.